

제421회 임시회
'24. 10. 11.(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이상정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4년 10월 2일
- 회부일자 : 2024년 10월 2일

3. 제안이유

- 지방의료원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보건 의료 발전을 위한 공익적 목적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공병원임.
- 즉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로 수익성을 우선하는 민간 병원에 비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충청북도 내 의료원이 공익적 사업 수행으로 인해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 보조와 더불어 중장기적 안정 운영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금 설치와 공익적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운영비 부족분의 충당을 위한 충청북도의 지원에 대해 규정함.
(안 제7조의2)

5. 검토의견

가. 제출배경

- 공공의료원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병원으로 공익성을 추구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음. 따라서 수익을 우선시 하는 민간 병원과 달리 공익적 업무 수행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착한 적자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공공의료원인 청주·충주의료원의 운영비에 대한 지원과 중장기적 안정 운영을 위한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3조제4항은 약어표기도 없이 잘못 사용된 약어를 바로잡은 것임.
 - ※ “도” → “충청북도”
- 안 제7조의2는 기금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 의료원 운영 및 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충당을 위해 이사회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 조례에 기금 설치에 대해 규정한 타 시도(2): 인천, 광주
 - 또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사업 및 그 밖에 공익적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인해 의료원의 운영비 부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1)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

1)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보조금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사업) ① 지방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이하 “공공보건의료사업”이라 한다)
3. 삭제 <2015. 1. 28.>
4.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5.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7.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 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지방의료원의 운영비에 대한 지원과 중장기적 안정 운영을 위한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내용상 타당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
- 또한 도 담당부서 및 도 내 의료원과 협의를 진행했고, 민의 수렴을 위한 조례안예고 등을 거친 바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
- 단 도 담당부서는 지방의료원의 적자분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할 때,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제4항2)을 준용해 공익적 사업의 수행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함으로써 방만한 경영에 의한 적자를 지원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2)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이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조사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거나 출연·보조할 때 제3항에 따라 조사된 비용을 고려하여 지원의 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다.